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관련 법령의 향후 발전 방향 연구

-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

2024.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안희정

<차 례>

I. 서론	3
II.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외 현황	4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4
2. 개인정보 보호법 해외 동향	15
III.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20
1. 자동화된 결정과 개인정보 보호	20
2.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35
3. 발전방안	48
VI. 결론	53

I. 서론

예전 산업사회 시대에서 데이터는 큰 의미가 없었으나, 디지털 환경에 따른 급속한 변화가 발생하는 현대 사회는 모든 사상과 생각을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이러한 데이터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소유권’ 주장이 어려웠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그 자체로 상당한 값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 스마트폰 보급과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초연결 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인해 연간 생산되는 “데이터 중 개인데이터의 비중이 약 75%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거래가치가 있는 개인 데이터(개인정보)는 다크웹 등에서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두드러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디지털 경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불리며,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예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단어조차 생경하였으나,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1) 한국데이터진흥원, 국내 개인데이터 이용환경 분석 연구보고서, 2017.11.1면(출처 IDC, IDC Digital Universe Study)

II. 개인정보 보호법 국내·외 현황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지는 그리 긴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무수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국민(정보주체)의 정보가 바르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1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생겨났다.

이런 와중에 유럽연합의 GDPR에서는 유럽연합에서의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국가가 GDPR과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영위해야 개인정보 국내이전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도록 요구가 발생했기에 국내에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의 일부를 흡수·통합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규정을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①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정보를 의미한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정된 이래로 그 법령의 전면개정이라고도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정보주체가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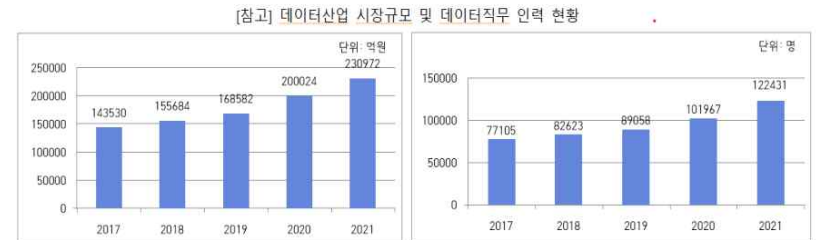
이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2차 개정의 배경과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추진경과

- '22. 12. 5. :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대안 의결(정부안 + 의원안 20건)
※ 국회 제출('21.9.28.)
- '23. 2. 1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을 의결
- '23. 2. 27. : 국회 본회의 의결
- '23. 3. 7. : 국무회의 원안 의결
- '23. 3. 14. : 공포
- '23. 9. 15. : 시행

가. 입법 배경

최근 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와 종사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침해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 20.2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비되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20.8)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 표준의 변화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법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 “① 신용정보 등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이 인정’ 되고 있고, ② 온라인·오프라인 분야의 기업에 대한 이원적인 규제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③ EU·미국·중국 등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경제적 제재로의 전환²⁾” 과 같은 이슈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기술 환경에서의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이중규제를 해소하며,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³⁾” 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주요내용

개정 보호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전면개정 되었으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되었다. 총 10장에 114개 조문이 있었는데 제6장이 삭제되며, 총 9장에 124개 조문으로 바뀌었다. 22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47개 규정이 수정되고 12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 5가지가 가장 주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 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제35조의 2 신설>
- ②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도입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 2 신설>
 -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와 정보주체간의 신용정보에만 국한되던 것에서 그 적용 객체가 대폭 확대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항 삭제
(제39조의 3부터 제39조의 15까지 삭제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
- ④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해외 법제에 맞춰 다양하하되 일정한 경우 적극 관여하도록 한 사항
-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근거마련 <제2조제7호의 2 및 제25조의2 신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사용 증가에 따른 규제도입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조치)

2) 출처:대한민국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391회(3차)

3) 출처:대한민국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제400회(2차)

그 외에도,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 요건 정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정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관리 강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과징금·벌칙 등 제재 규정 정비, 과징금 조항 통합 및 부과 기준 상향, 경제적 제재 중심 전환 및 형량 완화 등의 법 개정이 되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상세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국민이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이 신설” 되었다. (제35조의2 신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 제1항)

이때, 전송의상이 되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적법한 동의, 또는 계약 이행·체결 과정에서 처리되거나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정보이어야 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송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중단의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하고 있다.

전송요구권 신설이유는, 기존에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전자정부법」의 공공분야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등 일부 분야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인해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유통되고 있으나,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가 있고, 분야별 추진으로 인한 개선 필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의 도입이 요구 되었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 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 제2항)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정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도 함께 명시하였다. (제35조의3 제1항, 제2항)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신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2조제7호의 2 및 제25조의2 신설>

이는,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규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보호법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재 드론·자율주행자동차·배달로봇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가 많이 활용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유연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제25조의2 제1항)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불빛·소리·안내판·서면·안내방송 등으로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게 하였음에도 거부의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⁵⁾” 하고 있다. 관련하여,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외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정비)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삭제하였다. 2020.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특례 규정으로 단순 이전·병합함으로써 인해,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의 적용규정이 달라 기업의 법 적용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특례규정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규범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이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규정과 유사·중복되는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으로 통합·정비하여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 단일화하였고, 특례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국내대리인 지정, 이용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확대 적용하였으며, 유효기간(1년) 경과 시 파기 또는 별도 보관 의무 삭제, 방송사업자 준용 규정 등 불필요한 특례규정은 삭제하였다.”⁶⁾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설명요구권, 거부권을 부여하였다.” <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 2 신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대상으로,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최근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자동화된 결정에 의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호법이 시행되면 정당한 사유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개인정보 국외이전) 국외이전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해외 법제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정보주체의 동의’ 이외에도 인증조치, 적정성 결정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지명령권을 신설,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1항 제2호

6)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3.7. 보도자료)

온라인 거래의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없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허용된다.

해당 요건 규정(제28조의8)은 ①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이나 조약 등에 국외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④ 이전받는 자가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경우, ⑤ 이전되는 국가·국제기구 등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정성 확보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중지명령권(제28조의9)을 신설하여, 국외이전에 따른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는데, 국외이전 중지명령은 목적외 이용 금지 등 법률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등 보호법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외이전 중지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중지명령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21년 12월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선진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 인정되어 EU 진출 한국기업이 별도 절차없이 EU의 공공데이터를 포함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6) (동의제도 개선 등) 기업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활성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제도를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요건을 정비하였다.

기존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적법처리가 가능하였고(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불가피하게'의 해석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개정법은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적법처리의 범위를 넓혔다.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요건을 삭제하여,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계약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사실상 필수 동의가 없어지고 선택동의만 남게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배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코로나 초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중위생(코로나 19 등) 목적인 경우에도 파기, 안전조치 등 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고, 그리고,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도 적용 제외규정에서 삭제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긴급상황에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생명 등 보호를 위한 급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

관련하여, 현재 기업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개정법이 계약이행 등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실무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이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및 개선권고, 사실조사권 강화(제30조의2)

기존 보호법 제30조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의 적정성 등 기준의 부재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있었으며, 이에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개선 권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평가내용은 ①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②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③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④ 그 밖에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이다.

평가대상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및 규모,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행위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8)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기존에는 분쟁조정 요청 시 공공기관만이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였으나,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제43조)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가 생겼다.

또한, 분쟁 조정을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및 자료조사 등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제45조)하였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시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침해중지, 손해배상 등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하는 구조로 사실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인 조정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에 ‘거부’로 간주하던 것에서 ‘수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기준을 전환(제47조)하였고, 분쟁조정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실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9)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개인정보의 불법 사적 이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기존 보호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 금지행위 규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제59조제3호)하여 이를 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의 사적 무단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이다.

10)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 기업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범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기존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업무회피를 초래하였으나, 개정 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형벌규정을 정비하고, EU 등 글로벌* 입법 추세에 발맞춘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필요에 따라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과징금 규정을 정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에서 ‘전체 매출액’ 3%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효과성과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전면개정이라고 할 만큼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그 중에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주요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신설된 개인정보전송요구권과 AI시스템 등으로 인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거부권과 같은 권리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국민(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또한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EU·영국) 전세계 매출액의 4% (미국) FTC법에 따라 위반 개별 건당 최대 1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싱가포르) 전년도 매출액 10%출처:<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3.7. 보도자료)

2. 개인정보보호법 해외 동향

가. EU

현재는 유럽 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3.13. EU는 최초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AI ACT)안을 승인하였다.

1) 유럽 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주요 내용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 도입시기 : 2018년 5월 EU시행
 - ▶ 적용범위 : EU회원국 및 EU와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
 - EU에 사업장 가지고 있는 기업(*역외적용)
 - EU내 정보주체인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정보주체의 EU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
 - ▶ 개인정보 역외이전 가능한 경우
 -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
 - 적절한 보호조치의 제공,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보장,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의 존재
 - 예외요건에 해당(명시적 동의, 계약의 이행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
 - ▶ 제재 :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
 - (일반적 위반) 직전 회계연도의 전세계 매출액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 부과
 - (심각한 위반) 직전 회계연도의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또는 2,000만유로(266억원) 중 높은 금액 과징금 부과

나. 미국

1) 개인정보 보호법

미국은 연방법, 개별법으로 양분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GDPR 제정에 영향을 받아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PA('20.7)가 제정되었고, 이후 다수의 주에서 같은 법이 제정되었다. 연방법은 제정 준비중에 있다.

CCPA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권리확대, 기업의 의무강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 적용대상 일부 축소, GDPR 원칙의 제한적 도입 등이 있다.

(향후 전망) 연방법으로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조만간 제정할 것으로 예상. 기업 등 법규를 준수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수십 개의 주법 보다는 하나의 단일한 연방법 준수가 유리한데다 연방법으로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면 EU가 자국과의 거래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적정성 획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의회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노력에 착수하였다.

2) 바이든 정부의 첫 '인공지능 행정명령'

2023년 10월 30일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번 AI 행정명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담고 있다. 분량의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명령은 AI 개발 기업의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도구의 안전성 표준 마련, 콘텐츠 인증표준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중국

▶ 도입시기 : 개인정보보호법 ('21.11)

GDPR의 영향을 받은 내용도 일부 있으며, 중국 특유의 폐쇄성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이 적용

- ▶ 적용범위 :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됨은 물론
 - 중국 외에서 중국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도 적용

(중국 외에서 중국 내 자연인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개인의 활동을 분석 평가,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적용)

- ▶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 또는 수행
 - 법적의무의 이행
 - 공중위생 사건 대응 등 긴급한 비상사태에서 개인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
 - 공익을 위한 뉴스보도, 여론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 처리자의 의무
 - 내부 관리제도의 수립 및 보안기술조치 실시
 - 사전 위험평가 실시
- ▶ (향후 전망)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여 외국 기업활동 위축 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 개인정보 중국 내 보관, 국외 이전 제한 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배상 책임 등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라. 일본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 APPI⁸⁾

일본의 데이터 보호 법률인 APPI(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은 2003년 일찍이 채택되었고 이는 아시아의 첫 번째 데이터 보호 규정 중 하나이다. 2019년 1월 23일에 법률이 개정된 덕분에 일본은 GDPR이 발효된 후 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가 되었고, 2020년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 적용범위 : 일본에 있는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
 - 일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에 위치하거나 국외에 사무실을 가진 회사를 말한다. (사업 목적으로 몇 명의 개인을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한 사업자를 포함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를 포함)

- ▶ 보호 데이터 유형
 - APPI는 개인정보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데이터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 첫 번째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생체인식 데이터와 같은 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이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는 차별이나 편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로 병력, 혼인 여부, 인종 종교적 신념, 범죄 기록 등이다.
 - APPI는 또한 개인 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한 익명 데이터는 개인 정보와 동일한 엄격한 처리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데이터 전송에 사용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고 이를 수신하는 제 3업체가 익명 데이터를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020년 APPI 개정은 개인과 관련되지만 추가 데이터와 대조하지 않으면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으로 처리된 정보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범주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자는 익명으로 처리된 정보를 사업 분석, 전산 모델 개발 등 내부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데이터에서 파생된 익명으로 처리된 정보를 삭제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수집된 원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지만 향후 잠재적인 통계 분석 사용을 위해 보유할 수 있다.
- ▶ 데이터 주체의 권리
 - APPI 규정에서 데이터 주체는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열람 / 교정 / 정지 방법, 개인 정보 취급에 관련된 민원 제출 장소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데이터 위반 알림 의무
 - 사업자가 개인의 권익을 위반할 수 있는 데이터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를 입은 데이터 주체는 물론 PPC에 통보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데이터 주체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경우 APPI는 사업자가 대신 공고를 내고 사무소를 설치해서 문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출처] 일본의 데이터 보호: APPI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작성: 코소시스]

▶ 데이터 전송

- 2020년 개정은 제3업체 데이터 이전 거부에 대한 예외 사용을 제한한다. 회사는 더 이상 허위 또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전하거나 기존 거부 예외를 근거로 개정 정보를 계속 이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당 데이터를 계속 이전하려면 데이터 주체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이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국가 안보, 법률 문제 또는 공중 보건 문제 사례가 포함된다.
- 사업자를 대신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일본 내에 있는 경우 제3업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업체가 처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용 목적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다.
- APPI 개정은 해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 수신 업체가 일본과 동등한 데이터 보호 수준을 국가에 위치하고 일본의 데이터 보호 표준을 준수하는 계약을 해외 수신 업체와 체결하거나 데이터 이전을 사전에 동의한 데이터 주체의 개인정보의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다.

▶ 데이터 위반 벌금

- 2020년 개정안은 최대 벌금은 약 \$815,000 이고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8,150 벌금에 처할 수 있다. PCC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최고 \$4,000 벌금을 물어야 한다.

III.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1. 자동화된 결정과 개인정보 보호

2023. 3.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 이라 한다)” 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제4조 제6호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 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의2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조문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이나 기계에 따른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권리로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포함, 정보주체가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의 기초가 되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EU(유럽연합)의 GDPR(개인정보 보호법) 22조 ADM(Automated decision-making) 규정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기실 EU의 GDPR에 상응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섭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37조의2는 신설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 조항은 빠른 속도로 고도화·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 이다.

2021년 12월 17일,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EU 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이 채택되었는데, 이로써 한국 기업 들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항 체결과 같은 추가 절차나 인증 없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활히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EU의 결정은 국내 법제가 GDPR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마련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는 EU 적정성 결정 기준을 통과하기 위하여 GDPR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국내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러한 적정성 결정은 몇년 후 다시 EU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되며, 그 이후로는 최소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므로, 향후 EU의 적정성 결정 유지를 위하여 GDPR은 국내 법제가 반드시 참조하고 수용해야 하는 입법이라 할 것이다.

GDPR은 2018년부터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결정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제한하는 정보주체 권리를 마련하였고, 이 규정은 기계에 의한 결정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이 일상 활동에서 남긴 정보에 기초하여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작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

해의 법제를 살펴보기전에 자동화된 결정은 무엇이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자동화된 결정이란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mated decision)이란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사람의 개입(human intervention)이 배제된 경우” 를 의미한다.

나. 자동화된 결정 사례

현재 자동화된 결정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채용 면접, 복지 수급자 선정, 금융기관의 대출시 신용평가 등이 있다.

인공지능은 빠른 업무 처리 속도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 공정을 무기로 지금까지 인간이 해왔던 업무를 하나씩 대체해오고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2020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인사업무 등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회사들이 대안 정보를 활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신용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특정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판매 데이터, 환불·리뷰·단골 정보 등을 활용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대출을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성별, 장애 유무, 인종, 종교 등에 있어 사회적 소수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게 더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AI에 의한 편향의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알고리즘 치안 정책을 쉽게 채택한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결정은 근본적인 편견과 오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 미시간주에서 한 흑인 남성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하룻밤 사이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구금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잘못 식별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러한 AI의 편향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의 신설이 요구된다.

다. GDPR의 자동화된 결정 조항

2018. 5. 25. 부터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프로파일링’ 및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고,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1)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p>GDPR Article 22 para 1 Article 22 GDPR.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including profiling</p>	<p>GDPR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p>
<p>"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not to be subject to a decision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including profiling, which produces legal effects concerning him or her or similarly significantly affects him or her."</p>	<p>"1.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
<p>"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decision:"</p>	<p>"2. 결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p>
<p>"(a) is necessary for entering into,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a data controller;"</p>	<p>"(a) 정보주체와 컨트롤러 간의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p>
<p>"(b) is authorised by Union or Member State law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and which also lays down suitable measures to safeguard the data subject's rights and freedoms and legitimate interests; or"</p>	<p>"(b) 컨트롤러에 적용되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p>
<p>"(c) is based on the data subject's explicit consent. "</p>	<p>"(c)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p>

<p>"3.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oints (a) and (c) of paragraph 2, the data controller shall implement suitable measures to safeguard the data subject's rights and freedoms and legitimate interests, at least the right to obtain human intervention on the part of the controller, to express his or her point of view and to contest the decision. "</p>	<p>"3. 제2항 (a)호 및 (c)호의 사례의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 최소한 컨트롤러의 인적 개입을 확보하고 본인의 관점을 피력하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p>
<p>"4. Deci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not be based on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referred to in Article 9(1), unless point (a) or (g) of Article 9(2) applies and suitable measures to safeguard the data subject's rights and freedoms and legitimate interests are in place."</p>	<p>"4. 제2항의 결정은 제9조(2)의 (a)호와 (g)호가 적용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가 갖추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제9조(1)의 특별 범주의 개인 정보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p>

2) GDPR 제4조제4항. 프로파일링 정의

<p>Article 4 GDPR. Definitions</p>	<p>제4조 GDPR. 정의</p>
<p>"(4) 'profiling' means any form of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sisting of the use of personal data to evaluate certain personal aspects relating to a natural person, in particular to analyse or predict aspects concerning that natural person's performance at work, economic situation, health, personal preferences, interests, reliability, behaviour, location or movements;"</p>	<p>"(4) 프로파일링은 특히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말한다."</p>

라. GDPR과의 비교 : 거부권과 설명요구권

일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와 GDPR 제22조 규정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긴 한다. 그러나, GDPR 규정은 ADM의 원칙적 금지의 입장에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세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예외적 허용의 경우>

- ① 정보주체가 사전에 자동화된 결정을 받는 것을 승낙(동의,허락)한 경우
- ② 타 법률에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
- ③ 계약의 서비스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경우

세가지 경우에 자동화된 결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자동화된 결정이 있을 때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 등 이의 제기권을 둔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ADM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금지하는게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데, 이러한 ADM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때에 한해서 정보 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건은 결과적으로 비슷하지만 상이한 점이 있다. GDPR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자동화된 결정에 좀 더 명확하고 유연한 태도로 접근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 거부권 :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개정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하 ‘거부권’ 이라고 한다)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ii)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i)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1항 단서)고 단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뒤에서 보는 설명요구권이 예외 사유 없이 인정되는 결과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규율 방식은 GDPR과 유사하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즉, GDPR 제22조는 제1항에서 자동화된 처리에만 기초한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그리고 제3항에서 일부 예외 사유의 경우 정보 처리자(controller)의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개정법 제37조의2는 GDPR을 참고하면서도 보다 명확하고 균형있는 규율을 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거부권 행사의 효과가 그러하다.

즉, 제37조의2 제3항은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문언상으로는 거부권 행사의 효과와 설명요구권 행사의 효과가 모두 자동화된 결정의 비적용,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설명 등으로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거부권과 설명요구권의 취지와 요건이 서로 다른만큼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9)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 p. 8.103) 박노형/김효권,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사법 제62호, 사법발전재단, 2022, 372, 376면 참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의 규율 89

2) 설명요구권 : 자동화된 결정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정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거부권의 경우와 달리 예외 사유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거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개정법 제37조의2 제3항). 이러한 규율 역시 GDPR과 유사하면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GDPR에서는 거부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된 결정이 본인에 관한 법적 효과를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설명요구권을 인정한다[§ 15(1)(h), § 2 (1),(4)].107)

GDPR의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인 제22조에는 설명의 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 제71항에 서술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설명요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정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105)

다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2023. 4. 4. 정보주체의 열람권에 관한 GDPR 제15조 제1항 (h)에 근거하여 설명요구권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106)

개정법 제37조의2는 설명요구권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의 하나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한 규율을 꾀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 불완전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2023. 11. 23. 입법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 제44조의3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 거부권 행사시 자동화된 결정의 비적용 및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의무(제1항), ii) 설명요구권 행사시 설명의무(제2항)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0)

다. 자동화된 결정 시행령 개정안

2024. 3. 15. 부터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 요구 절차, 설명 요구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기준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의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과 관련하여 ‘사전 공개 사항’과 ‘개별설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동화 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정보”와 “정보주체에게 실제로 내려진 개별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 결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대하여 ‘실제로 내려진 개별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대하여 사전 공개 사항을 제공하면 된다.

[요약]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개별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사전 공개 의무
권리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
권리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	○

* 설명 요구에 사전 공개 사항 제공 가능

10)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lId=9553#LINK>.

바.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한 최근 EU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 조항과 관련하여 보호법 시행령이 최근 24년 3월중 개정·시행 예정이며,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AI 기반 인적성 및 면접 평가 시스템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시행령의 내용만으로는 자동화된 결정 조항의 적용 기준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가령 시행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의 “완전히 자동화”, “결정”, “중대한 영향” 과 제37조의2 제3항의 “정당한 사유” 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국내에서 자동화된 결정 조항이 시행될 모습과 관련하여, 국내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EU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네덜란드 : 우버 사례

네덜란드에서는 우버(Uber)로부터 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계정이 자동 차단된 드라이버들이 우버를 상대로 EU GDPR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정보접근권(설명요구권) 위반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EU에서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우버(Uber) 사건'에서 Uber 개인정보처리방침 상의 자동화된 결정 조항에 규정된 '사기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계정 비활성화'에 따른 조치를 둘러싸고 1심 법원은 일시적인 차단은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 결과를 초래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알림 메시지 내용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결정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계정 비활성화 결정은 Uber가 원고들과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인정했다. 2023년 4월 네덜란드 2심 법원은

우버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드라이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설명 요구의 정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어떤 행위들이 계정 비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적어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그 요인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 자동화된 결정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¹¹⁾

이 소송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 기준과 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다투어 졌으며, 대표적으로 법원은 우버 직원이 드라이버 계정 차단 과정에 관여했다라도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거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었다면 인적개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 이용 차단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완전히 자동화’ 된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¹²⁾

1심과 2심 법원의 이러한 해석상 큰 편차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낮춰서 AI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AI 발전과 국민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이나 가이드를 마련하여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법의 해석·집행을 해야 한다.

[참고] Uber 사건개요

- ▶ 플랫폼 사업자로써 네덜란드에 위치한 Uber BV는 운전자 관리 시스템 운영
- ▶ Uber BV는 플랫폼 일부 운전자 계정 비활성화
- ▶ 해당 운전자들은 Uber BV를 상대로 GDPR 제22조에 따른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 제기

1심 판결 내용

- ▶ Amsterdam 법원은 Uber BV의 운전자 관리 시스템의 Fraud detection을 위해 내부 인력을 통해 교차 검증. 인적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GDPR 제22조에 따른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1.3.11.)

2심 판결 내용

- ▶ 법원은 부정 이용 차단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결

11)[ET시론] AI시대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AI시대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2024.2월 / 최경진) <https://kollo.kr/appcontent?id=bd5Ghb>

2) EU 사법재판소(CJEU)의 SCHUFA 결정(2023.12.7.)

SCHUFA의 개인신용점수 평가행위 동일 내 7,000만명의 신용정보 보유 은행의 대출결정에 대한 강력한 영향 신용점수 평가가 결정인지 여부
 - CJEU는 결정(ADM)으로 인정

작년(2023년) 12월 7일 EU 최고사법재판소(CJEU)는 독일의 독과점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CHUFA (Schutzgemeinschaft für allgemeine Kreditsicherung)가 개인의 지불능력에 관한 점수(확률값)를 자동화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GDPR 제22조의 자동화 결정(ADM)으로 인정하였다.

위 CJEU의 결정에는 SCHUFA의 개인신용평가 점수를 전달받은 은행 등이 이러한 값에 크게 의존하여 대출 등을 ‘결정’ 한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SCHUFA는 이 사건에서 자신은 개인신용 ‘평가’를 할 뿐이고 대출 등의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주체는 은행의 대출 거절 결정에 대해 은행에 대해 설명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JEU는 전문(recital) 71의 설명, 은행이 SCHUFA의 평가(establishment)에 크게 의존하여 대출 등의 결정(decision)을 한다는 점을 들어 SCHUFA의 행위를 GDPR상의 ADM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정보주체는 SCHUFA에 대해 관련 판단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위 CJEU 판결의 법적책적 취지는 은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SCHUFA의 신용점수설정(scoring) 행위를 ADM으로 보지 않고 은행의 대출거절 결정을 ADM으로 보게 되면, 정보주체는 신용점수설정의 세부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은행으로부터 근거 설명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SCHUFA CASE Background

<p>The case was first referred to the CJEU by the Administrative Court in Wiesbaden, Germany, after a German resident (referred to as ‘OQ’ in the judgment) made an application to exercise her rights under Article 15(1)(h) GDPR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ADM processes which had used her personal data.</p>	<p>이 사건은 독일 비스마덴에 있는 행정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독일 거주자(판결에서 ‘OQ’라고 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ADM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GDPR 제15조 (1)(h)에 따른 권리 행사를 신청한 후였다.</p>
<p>The company in question, SCHUFA AG Holding (“SCHUFA”), is a German credit reference agency who provides credit information in the form of predictions of future behaviour of individuals to financial institutions. SCHUFA used OQ’s personal data to produce a ‘score’ indicating her creditworthiness which it then shared with a German bank. On the basis of the score provided by SCHUFA, the German bank rejected OQ’s application for a loan.</p>	<p>문제의 회사인 SCHUFA AG Holding (“SCHUFA”)은 개인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형태의 신용 정보를 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독일의 신용 참조 기관이다. SCHUFA는 OQ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녀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생성한 다음 독일 은행과 공유하였다. SCHUFA가 제공한 점수를 기반으로 독일 은행은 OQ의 대출 신청을 거부하였다.</p>
<p>In response to OQ’s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SCHUFA provided her with the score and broadly described the methods used to calculate it. However, citing trade secrecy, it refused to disclose the specific element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and their relative values.</p>	<p>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 OQ의 요청에 따라, SCHUFA는 그녀에게 점수를 제공하고 그것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무역 비밀주의를 이유로 계산에 고려된 구체적인 요소와 그것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p>
<p>SCHUFA argued that its activities of scoring did not constitute ADM as it was ultimately the German bank who made the decision to reject the loan application, and that SCHUFA’s role was to produce an automated score for OQ.</p>	<p>SCHUFA는 대출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독일 은행이었기 때문에 채점 활동이 ADM에 해당하지 않으며, SCHUFA의 역할은 OQ에 대한 자동화된 점수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사.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미국 법령
- the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CPPA)

미국은 연방법, 개별법으로 양분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GDPR 제정에 영향을 받아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으로 CCPA('20.7)가 제정되었고, 이후 다수의 주에서 같은 법이 제정되었다. 연방법은 제정 준비중에 있다.

CCPA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권리확대, 기업의 의무강화, 개인 정보 감독기구 설립, 적용대상 일부 축소, GDPR 원칙의 제한적 도입 등이 있다.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미국 법령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27일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국(CPPA)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개정판, CCPA)에 따른 이행 규정의 일환으로 자동화된 의사 결정 기술에 대한 규칙 결정 초안을 발표했다..

CCPA는 CPA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 Tech)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도록 지시한다.

- 1) 특히, 기업의 ADT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CPA는 인공 지능(AI) 사용에 대한 중요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11월 27일에 발표된 현재 ADT 규정 초안은 ADT를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개인 정보를 결정하거나 실행하거나 인간의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의 전체 또는 일부로서 계산을 사용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한다. .
- 2) ADT는 또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자연인과 관련된 특정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고 특히 그 자연인의 직장에서의 성과, 경제 상황, 건강, 개인 선호도, 관심사, 신뢰성, 행동, 위치 또는 움직임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개인 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의 모든 형태 “를 포함한다.
- 3) 현재 ADT 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의 ADT 사용에 대한 사전 사용 공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외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이 ADT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해야 함한다.

4) ADT 규정 초안은 또한 기업이 다음과 같은 ADT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안된 규칙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정 시나리오에서 자동화된 의사 결정 기술과 관련하여 사전 사용 통지, 옵트아웃 기능 및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① 소비자와 관련하여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 ② 근로자, 독립 계약자, 취업 신청자 또는 학생의 자격으로 소비자 프로파일링(키스트로크 로거를 사용한 프로파일링 직원 등).
- ③ 소비자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있는 동안(예: Wi-Fi, Bluetooth 추적, 드론 또는 지리적 위치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소비자를 프로파일링하는 것) 프로파일링.
- ④ 행동 광고를 위한 소비자 프로파일링(16세 미만 소비자에 대한 옵트인 포함).
- ⑤ 기업이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소비자 프로파일링(이사회 논의를 위한 추가 옵션으로 나열됨)
- ⑥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을 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이사회 논의를 위한 추가 옵션으로 나열됨).

<원문>

- For decisions that produce legal or similarly significant effects concerning a consumer;
- Profiling a consumer in their capacity as an employee, independent contractor, job applicant, or student;
- Profiling a consumer while they are in a publicly accessible place;
- Profiling a consumer for behavioral advertising (listed as a discussion topic);
- Profiling a consumer that the business has actual knowledge is under the age of 16 (listed as an additional option for board discussion);
-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o train 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 (listed as an additional option for board discussion).

2. 공개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활용

근래 가장 이슈가 된 인공지능 AI는 단연 ChatGPT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그 어떤 분야에서든 ChatGPT만큼 화제성을 일으키는 주제는 없었던 것 같다. OpenAI가 2022. 11. 30. 공개한 Chat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람의 상호작용을 모사하는 대화에 사용하는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챗봇을 말한다. Chat GPT는 딥 러닝을 사용하여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학습되고,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한다.

ChatGPT는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 하며 놀라울 정도로 인간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제공한다. ChatGPT는 출시 이후 첫 주에 만 명이상이 사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이용자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인공지능보다 높은 사회적 수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3월 14일 ChatGPT로 전 세계에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인공지능 업체 OpenAI는 또다시 새로운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모델(LLM) GPT-4를 공개하였다.

GPT-3.5 시리즈의 한 모델이자 현 시대 인공지능 끝판왕이라 불리던 ChatGPT를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하였다. 이처럼 똑똑한 지성체같은 GPT의 뿌리는 사실 인간에 의해 엄청나게 많이 학습된 데이터이다.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들은 수많은 언어를 학습해서 지금의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고 하기에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한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선도적인 회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 AI

역시 ChatGPT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했는데, 자체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였다.

OpenAI가 인터넷 크롤링을 통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GDPR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는 견해를 관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으며 이와 관련한 관례는 합법성 여부의 근거나 논리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이익을 형량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연한 해석이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볼 수 있다.

ChatGPT와 경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2021년까지 공개된 서적, 기사, 웹사이트 및 게시글 중 약 3,000억 단어를 인터넷 크롤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을 위해 수집·사용한 공개된 정보에는 ‘공개된 개인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도 포함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콘텐츠의 무단 사용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있다.

관련하여, 2023년 3월 이탈리아에서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챗GPT 접속이 차단됐다. 챗GPT가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의 적법성, 데이터 처리 근거와 사용자 연령 확인 절차가 없다는 이유였다.

[참고] 영국과 호주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한 클리어뷰 AI (안면인식 솔루션)의 개인정보 침해 13)논란

1) 영국 ICO의 제재 처분

영국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2022년 5월 미국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인 클리어뷰 AI를 상대로 영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영국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750만 파운드(12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관련하여 클리어뷰 AI에 대해 영국 거주자의 인터

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입수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수집한 정보는 삭제할 것을 확정하는 명령도 내렸다.

클리어뷰 AI(Clearview AD)는 2017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소셜미디어서비스와 웹사이트에서 스크래핑 한 200억개 이상의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람들의 얼굴 이미지를 기계 학습에 활용, AI 기반 ID매칭서비스를 지원하는(특정 개인의 얼굴 이미지로 그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 안면인식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클리어뷰AI의 안면인식 솔루션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를 클리어뷰AI의 보관 중인 DB의 이미지에서 추출한 특징점과 비교 분석해,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때, 클리어뷰가 보유중인 이미지의 출처 URL도 함께 제공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한 이미지의 인물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영국 ICO는 클리어뷰AI의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내용에 대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상용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영국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명령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ICO는 클리어뷰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할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실패하면서 개인 데이터로 클리어뷰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합법적으로 기대하지 못할 수 있으며 - 그 이유는 클리어뷰AI가 수집한 정보는 SNS 등 웹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스크래핑 한 것이므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클리어뷰의 상업적 서비스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예상하거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

더불어, 클리어뷰AI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기한 보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 호주 OAIC의 제재 처분

영국 ICO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던 호주 개인정보 보호 당국인 OAIC는 ‘22년 11월 클리어뷰AI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호주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호주의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했다며, 클리어뷰에게, 문제가 되는 데이터 수집 중단 및 자료 파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보유중인 호주인의 데이터(얼굴 이미지와 그 특정 정보 일체)를 삭제하고 OAIC에 확인서를 보낼 것을 명했다.

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제 현황

1)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현황

‘공개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15조 제1항 제1호1), 제17조 제1항 제1호2)), ” 정보주체가 이미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해당 규정들은 단순히 ‘동의’라고만 명시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고는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동의를 받는 세부적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제22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적법한 동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등을 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위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주체가 본인이 공개한 개인정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법 제20조와 관련한 권리 행사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13) [출처] 美 안면인식 솔루션 업체 ‘클리어뷰AI’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제재 사례 살펴보기
https://blog.naver.com/n_privacy/222589982822

챗GPT AI의 출현 이전에도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취급의 문제와 관련한 이슈는 있어 왔다. 2016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학교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회사에게 해당 대학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주장한 사건(일명 '로앤비 사건')이 이슈가 된 바 있다.

[참고]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다235080 부당이득금반환 (카) 파기환송(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 A씨는 법률정보 제공업체 로앤비가 대학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A씨(법학과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A씨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로앤비 사이트에서 유료로 서비스(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었다. 이 사건 논점은 비록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하급심은 로앤비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공인(公人)의 공개된 개인정보는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는 것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호사를 '공적인 존재'로 인정했으며 공무원, 정치인 등도 공인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국립대 교수는 논문이나 집필활동, 각종 단체 활동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는 공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대학 홈페이지나 교수요람, 사립대학 교원명부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A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어 "로앤비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다라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의 법적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기존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강조해왔던 법원의 입장에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해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였다.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신용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¹⁴⁾

또한 로앤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여 이익형량에 따른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행정법원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기준 부분도 함께 참조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개인정보의 공공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2. 메타 CA스캔들

[이용자친구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SNS)에 공개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3자 제공시 이용자친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로앤비 판결의 체계적 적용]

이 사건에서 메타는 제3자 앱에 제공된 이용자친구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 내에 공개된 개인정보이므로 과거 로앤비 판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 235080 판결)이 제시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친구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 로앤비 판결과 최근 대법원 판시를 함께 참조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래 동의를 구할 때 고지되는 4가지 법정 고지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대법원의 로앤비 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을 보다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정의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¹⁵⁾이고, 4가지 법정 고지사항은 바로 이를 구체화하여 정보주체의 결정 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다.

그런데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로앤비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사항 중 전단은, 4가지 법정 고지사항 즉 정보주체의 결정 내용을 추단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후단은 자세히 보면 결국, 정보처리자의 실제 처리 과정에서 그러한 추단된 결정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즉 대법원은 로앤비 판결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무분별한 2차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이미 '동의'한 것이나 다를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먼저 판단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동의'라는 것은 당연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 결과값일 것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 결과인 '결정 내용'을 객관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4가지 법정 고지사항이니,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추단함에 있어서 4가지 법정 고지사항에 상응하는 정보주체의 인식 가능성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로앤비 판결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위 4가지의 법정 고지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로앤비 판결의 법원리를 보다 체계화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아래 판시 참조).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려면 법정 고지사항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미리 용이하게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고지사항 전부를 명확하게 게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될 당시 해당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된다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위 4가지의 법정 고지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하라는 최신 대법원 판결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법원은 제3자 앱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이용자친구 스스로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쟁점조항이 요구하는 필수적 법정 고지사항의 명확한 인식 내지 예상 가능성을 전제로 한 추정적 동의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그 개인정보를 이 사건 정보이전 과정을 통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인 이용자친구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¹⁶⁾다.

위의 판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법원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우선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서 면책한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은 상당히 모호하다.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의 매우 불확실한 판단방식을 취하고 있다.

14)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34호), 2023년 9월 15일 시행

15)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1-5호), 2021.11.16.일 발령

16) [출처] 메타(페이스북) CA 스캔들 관련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의 정리|작성자 최주선 변호사]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가 위법한 이유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사회적 위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침해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라면, 또는 그 사회적 위해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당한 이용은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AI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앞서의 판례의 경우에서처럼 제3자 제공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정보주체의 인격 침해성은 불분명하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에서 출발한다.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AI 발전을 위해서 투명한 이용을 허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만 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된 분석기술을 통해 타인의 데이터를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 트렌드,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그 분석의 대상이 공개된 개인정보인 경우에 동의 없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2) AI 환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현재 정보주체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기존의 방어적 권리로서 '사생활 비밀 보호 혹은 '독점배타적 재산권(소유권 유사 재산권)'보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판례와 학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을 인격권으로 이해하는 데 거의 일치하므로 이를 구체화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인격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다면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를 논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한계를 보인다. 우선 인격권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결정'의 전제로서 인지 가능성이 전제된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결정'의 전제가 되는 '인지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첫 단계로 일정한 사항을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지'에 의해 정보주체의 '인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처리에 대한 '고지사항'을 명확히 하기란 어렵다.

가장 단순한 예로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수들의 프로필과 사진에 대하여 처리목적, 이용범위,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특정되어 고지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러하다. 특히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AI가 학습용으로 수집, 처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과 내용을 모두 고지사항에 명확히 담기 어렵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목적이 재설정될 수 있고 이러한 변동은 일일이 처음 고지에 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실시간 생성되고 공개되는 IOT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방법, 범위 등을 특정하여 일일이 사전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음으로 고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정보주체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개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로 발생할 위험과 혜택을 고지사항만으로 정보주체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무리다. 기존 정보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유형과 예측의 종류는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빠르게 진화한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이와 관련된 위험과 혜택을 완전히 평가할 수 없다.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기술적 세부 사항과 상세한 법적 내용으로 기술될 수 밖에 없으므로 평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3)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해외 입법 현황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보편적 규범인 것은 아니다. EU,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대만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EU GDPR

GDPR에도 우리나라에서처럼 공개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진 않았다. 다만 민감정보처리를 규정한 제9조 제2항 e에 “정보주체에 의하여 명백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의 경우에는 특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예외로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주체가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인 경우’에 민감정보라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는 경우 정보처리자의 처리에 동의한 것을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민감정보 처리를 별도로 허가한 것, 즉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보호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없는 활용의 여지가 법규상으로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⁷⁾.

그럼에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즉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처리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제14조 2항(f)(개인정보가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출처,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공개 출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를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정보주체에 해당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거나 비례적으로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공익적인 기록보존 목적, 또는 과학 및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목적으로 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고지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¹⁸⁾

다만 GDPR을 위한 EU 법집행 지침 제10(c)(민감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정보주체에 의해 명시적으로 공개된 경우)30)규정에 대한 29조 작업반의 의견서³¹⁾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어떠한 배경에서 공개되었는지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개인의 전기(傳記), 언론, 공개된 웹사이트 등에 공개되는 경우와, SNS 등에 공개되는 경우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엔 명백한 공개 의사가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읽고 숙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에 서비스 회사의 관련자가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SNS 등에 공개되는 경우의 자발적인 동의는 전자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¹⁹⁾

17) 출처 :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저자 : Lee Kwon II)
18) GDPR 제14항 제5조, GDPR 해설 62.

②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령으로 규정되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이용, 공개에 있어서 각각 예외를 규정하고, 해당 행정령은 범원기록을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대중에 제공할 목적으로 출판된 정보를 모두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③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개인정보 보호법(The Privacy Act of 2020)은 2023년 12월 6일 최근 개정되었으며, 뉴질랜드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를 “공개된 출판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인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인쇄되거나 전자형태로 된 출판물”을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시 예외가 적용된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원칙 제2항(d) 의하면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하여야 하나, 해당 정보가 공개 정보인 경우 이러한 의무가 면제”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처리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지만 정보의 출처가 공개출판인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²⁰⁾

[참고] 뉴질랜드, 개인정보 보호법 2020 (The Privacy Act of 2020) 中 발췌

<p>“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 means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contained in a publicly available publication”</p>	<p>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출판물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의미합니다</p>
--	--

19)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or trade union membership, and the processing of genetic data, 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data concerning health or data concerning a natural person’s sex life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allowed only where strictly necessary, subject to appropriate safeguards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data subject, and only where such processing relates to data which are manifestly made public by the data subject.”

20)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 동향

<p>"publicly available publication" : means a publication (including a register, list, or roll of data) in printed or electronic form that is, or will be, generally available to members of the public free of charge or on payment of a fee"</p> <p>Information privacy principle 2 Source of personal information</p> <p>(1) If an agency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the information must be collected from the individual concerned.</p> <p>(2) It is not necessary for an agency to comply with subclause (1) if the agency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p> <p>d) that the information is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or "</p>	<p>공개된 출판물이란 일반 대중이 무료로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인쇄 또는 전자 형식의 출판물(등록부, 목록 또는 데이터 목록 포함)을 의미합니다.</p> <p>[개인정보 보호 원칙 2] 개인정보의 출처</p> <p>"(1)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p> <p>"(2) 기관이 합리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1)항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p> <p>"(d) 해당 정보가 공개 정보인 경우"</p>
<p>Information privacy principle 10 "Limits on use of personal information</p> <p>(1) An agency that holds personal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in connection with one purpose may not use the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unless the agency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p> <p>(d) that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is a publicly available publication and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t would not be unfair or unreasonable to use the information; or"</p>	<p>"[개인정보 보호 원칙 10]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제한"</p> <p>"(1) 한 가지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기관이 합리적인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d) 정보의 출처가 공개 출판물 (publicly available publication)이며, 이 특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다."</p>
<p>"Information privacy principle 11 Limits on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p> <p>(1) An agency that holds personal information must not disclose the information to any other agency or to any person unless the agency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p>	<p>"[개인정보 보호 원칙 11]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제한"</p> <p>"(1)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동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단, 기관이 합리적인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d) that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is a publicly available publication and that, i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it would not be unfair or unreasonable to disclose the information; or "</p>	<p>"(d) 정보의 출처가 공개 출판물 (publicly available publication)이며, 이 특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을 것이다."</p>
--	---

3. 발전방안

1. 자동화된 결정 관련 조항의 불확실성 수정 필요

개정 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 조항은 AI와 관련한 일반적 권리로써 처음 도입되었으며, 정보주체에게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의미,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의 범위, 거부권이 인정되는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판단기준 등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나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이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적용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해석·집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 법령이나 지침, 해설서 등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동화된 결정’에서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령을 통해 좀더 구체화하여 법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인공지능(AI) 발전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수요 반영

가. 개인정보의 처리의 적법처리요건의 유연성 확보 필요

우리나라는 유럽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제15조제1항 제1호) 2)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5조제1항 제4호), 3)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제15조제1항 제6호)로 제한된다.

그러나 6가지 적법 요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최소수집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4호 또는 제6호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는 대부분이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나날이 변화하는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허용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엄격한 적법 요건은 현실과의 괴리와 형식적인 동의라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새로이 개정된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법령의 모호성으로 사전동의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제15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되어 사실상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근거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적용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학습용 데이터로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에 의해 현행 법령으로 AI학습용 데이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의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모호하며, 활용이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익에 대한 침해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정인을 식별할 가능성, 또는 학습결과인 알고리즘에 원본데이터 포함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배제한다면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사용 허용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공개된 개인정보의 판례와 관련하여 클리어뷰의 행위는 공개된 안면 정보를 수집·학습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원본 자료를 DB로 구축 특정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기 까지 한 의심의 여지없는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 행위로 생각된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전 세계 기관들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침해행위로부터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시 연구를 위한 AI 학습의 목적으로만 수집하고, AI 학습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PET)을 활용 원본 정보를 가명정보로 바꾸어 학습 및 원본정보에 대한 파기 등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불허되어야 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AI 학습 목적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수집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생시는 엄격한 처분 등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트위터, 유튜브 등을 개인의 일상정보를 공개하거나 하는 행위에서 이것은 이용자 누구에게나 오픈된 것이라는 것을 게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유튜브 등은 더 많은 구독자들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연예인 등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AI 딥페이크 사기 등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AI 활용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그 환경들을 기존의 기술로는 차단하기 어렵기에, 다시 그에 상응하는 AI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인해 AI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동의 방식을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진입이 어렵다. 구글, 페이스북 등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의 AI 연구가 활발한 이유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점에서의 법제도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살펴본 몇몇 해외 국가의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아예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견해가 있다. 대법원 등 각종 사법적 판단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명확한 입법적 조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에 입법을 통해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공개됨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 입법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주체를 식별할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다.

둘째, 더불어 제시되는 의견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 세부 방식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처리자는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그 처리를 유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처리 예외조항으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다만 개인을 식별할 목적 등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은 법령에 담은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의 각 호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크롤링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 후 인공지능 학습 등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학습용 데이터로 처리하는 (단, 식별목적은 제외한다.) 개인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만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이러한 이용이 당연히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야기해서는 안되며, 특히 식별 목적의 이용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AI학습용 데이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식별된 경우 즉시 해당정보를 파기하고 재식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법적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챗GPT의 출현 등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AI로 인한 편익과 함께 부작용도 발생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도 이에 발맞춰 ‘20년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의 도입, 23.3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

“AI 기술은 과거 불과 전기를 발견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 구글 최고경영자인 순다르 피차이가 강조했다 만큼, 인공지능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AI와 데이터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하는 AI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따르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AI를 통해 미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때, AI를 활용한 혁신을 위한 법·정책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AI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국 또한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행정명령 또한 이러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디지털 환경변화의 속도를 맞추어 변화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러나, AI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로 인한 정보주체의 권리 또한 보장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박노형 & 김효권(2022),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 신설 규정의 문제점 - EU GDPR과의 비교 분석

정혜영(2024),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분석과 평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김현경(2023),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에 대한 검토 — AI학습용 데이터로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김법연 & 주문호 (2021),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 동향

김연진(202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이권일(2020), 일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보도자료 2(023. 3.7)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4일 공포 예정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480호(2023.11.10),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인공지능(AI) 행정명령과 시사점

최경진(2024) AI시대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SESSIONID_KITA=26AE4DAF53A919D3FE9A3D815BD89DE7.Hyper?no=82051&siteId=1

김태욱(20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자동화된 결정 조항 입법예고 <https://www.bkl.co.kr/newsLetter/itemUrl.do?itemNo=5529>

최주선(2023), 메타(페이스북) CA 스캔들 관련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의 정리

file:///C:/Users/user/Downloads/%EB%B2%95%EB%AC%B4%EB%B2%95%EC%9D%B8%EB%AF%BC%ED%9B%84_%EB%89%B4%EC%8A%A4%EB%A0%88%ED%84%B0_20231101.pdf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영리적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Tech & Law]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성엽 교수(2021)

[tps://biz.chosun.com/opinion/expert_column/2021/10/12/PN2U422JO5FSBJO7D6BPT7ZPGI/](https://biz.chosun.com/opinion/expert_column/2021/10/12/PN2U422JO5FSBJO7D6BPT7ZPGI/)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isMain=N&fieldNo=&memberNo=&memberPageIndex=1&insightPageIndex=1&insightPages=1&target=&caseNo=&infoNo=&newsletterNo=5529&expertNo=&whichOne=NEWSLETTER&searchCondition=&searchMenuType=&searchKeyword=%EC%9E%90%EB%8F%99%ED%99%94%EB%90%9C+%EA%B2%B0%EC%A0%95>